

# M&A와 조세(I)

## 하 나 은 행 과 서 울 은 행 합 병 의 사 례

기업은 경영전략적, 영업전략적, 경제적, 재무적,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M&A를 진행한다. 재무적 이유로 M&A를 진행하는 기업의 주주들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자금조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절감효과를 얻기도 한다. M&A와 관련된 조세문제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것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병에 해당되는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국세청에서는 두 은행사이의 합병을 역합병으로 보아 무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었다. 동 M&A를 시간 순으로, 중요 쟁점사안 순으로 짚어보면서 M&A와 조세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글\_ 신기훈 회계사



해당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몇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자.

### <1> 합병의 종류

- ① **신설합병** : 합병당사자인 모든 회사는 해산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흡수합병** : 합병당사자인 2개 이상의 회사 중 존속하는 흡수합병법인이 소멸하는 피흡수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역합병** : 보통의 정상적인 합병은 인수회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피인수대상회사가 소멸회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역합병의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소멸하고 피인수대상회사가 존속기업으로 남는 형태의 합병이다.

### <2> 이월결손금

- ① 결손금이란 회계연도말 결산을 하였을 경우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란 동 결손금이 이전 회계연도에 처리되지 않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 ②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당기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의 역합병문제를 살펴보자.

하나은행은 6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던 서울은행과 지난 2002년 9월 27일에 합병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11월 14일에 합병관련 주주총회를 하였고, 2002년 12월 2일에 합병등기를 하였다. 당시 하나은행은 존속회사를 서울은행으로 정해 형식상 누적적자회사(서울은행)가 흑자회사(하나은행)를 인수하는 형태를 취했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서울은행은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후 2007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두 은행간의 합병을 '역합병'으로 간주하여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였다.

세법에서는 '역합병'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하여 '역합병'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5조).

2002년 합병당시의 관련 법인세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p>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특수관계인 법인간의 합병일 경우</li><li>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으로 할 경우</li><li>3. 상호변경등기를 할 경우</li></ol> |
|---|

하나은행은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였으며(적자회사인 서울은행이 존속회사가 되었음), 상호변경등기(합병등기일 후 2년 내에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함)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이 특수관계인지의 여부가 논란의 중점사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법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 당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서로 간에 지분관계는 없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 지분을 100%,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30%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수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우선주였으며,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이후 2003년 12월 세법개정시 '특수관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배경을 감안해도 과세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30%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우선주를 서울은행 합병 전에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소급하여 과세한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하나은행은 세무당국에 서면 질의를 하였으며, 서면으로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얻고 합병을 진행하였음에도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